

창원 의회 소식

제12호



창원시의회

<http://council.changwon.go.kr>

시민과 함께하는
창원시의회



CONTENTS



04 개회사

06 주요안건 처리현황

- 제37회 임시회(2014. 4. 28 ~ 4. 30.)
- 제38회 임시회(2014. 6. 13.)

16 5분 자유발언

- 제37회 임시회(이치우 의원 등 6명)

18 건의안 및 결의안

- 남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불가처분에 따른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지지 결의안
-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가족 생활안정보장 및 선박 안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21 위원회 활동

24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6 언론 보도자료





의장 배 종 천

개 회 사

제38회 창원시의의회(임시회) 본회의

존경하는 1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석기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우리 모두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울러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를 통하여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선되지 못하신 의원님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일궈낸 성과들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새로 시장에 당선되신 안상수 당선자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창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보름 후면 초대 통합창원시의의회 의원으로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창원시의의회는 개원 이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코자 노력해 왔고, 시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은 창원시의의회가 선진 지방의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은 이제 굳건히 다져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자생력과 성숙도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때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발전 방안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개선, 그리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더욱더 발전하고 정착될 수 있기를 중심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는 집행부의 긴급한 의안 제출로 인해 개최되는 것으로 비록 하루일정의 짧은 회기이지만 안건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의장으로서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 6. 13.

창원시의회 의장 배 종 천

제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4. 4. 28. ~ 4. 30.) - 3일간

주/요/안/건/처/리/현/황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제 의 자 : 의회의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2013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등 결산검사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 남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불가처분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발 의 자 : 김석규·강장순·여월태·홍성실 의원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가. 남산주공아파트는 1976. 9.에 준공되어 준공 후 38년이 경과한 창원시 관내 가장 노후한 아파트단지로, 2006. 6.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후 그간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건축심의 등 단계를 거쳐 2013. 8.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으나, 그간의 행정절차는 무시한 채 신축 건축물의 배치계획이 현행 법규에 적합하지 않다 하여 창원시는 2014. 1. 최종사업시행인가를 불가 처분하였음.

나. 창원시는 법규를 위반한 계획은 불가하다고 주장하지만, 조합측은 그간 창원시의 행정을 신뢰하고 단계별 인·허가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불가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 일관성, 신뢰보호 원칙 위배, 주거민 안정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다. 이는 창원시의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지원시설인 공동주택을 연결하여 개발한 태생적·근원적 문제이므로 향후 인접 타 단지의 정상적인 재건축사업을 위해서라도 특례규정 마련 등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함.

▣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지지 결의안

- 발 의 자 : 전수명 의원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공단은 1조 7천억원의 진료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음

나.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천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

다. 이에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함.

▣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 의원 정수 감소 및 창원시 행정기구 중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균형발전국, '14.12.31까지)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과 위원회별 위원 정수 및 그 소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제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4. 4. 28. ~ 4. 30.) - 3일간

주/요/안/건/처/리/현/황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보조금 범위에 개별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시켜 기금 보조 사업의 집행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토지의 개발 및 정비사업의 시행 등으로 조성된 지구 등에 대하여 사업 시행 전 사용하던 법정동 명칭과 구역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등의 분납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014년도 창원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14년도 창원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우리 시는 환경부의 전기차(EV) 선도도시 선정(2011. 11월) 이후 생태교통 활성화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방안을 정하여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창원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 정쌍학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 복지수요와 노인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따라 국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창원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마이스산업(MICE)산업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우리시 마이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이스산업 도시로서의 국제적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제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4. 4. 28. ~ 4. 30.) - 3일간

주/요/안/건/처/리/현/황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채권 소멸시효 시 교부할 금전이 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2014. 1. 1)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14. 1. 1)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을 신청하는 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용하는 법령의 조항 이동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면서 그 기능을 확대한 법령의 취지에 맞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종전에 수행하던 보육정보제공 외에도 가정양육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의 복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련법령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호별 입주인원을 조정하여 입주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임대료 등을 현실화 하고자 함.

▣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통합이후에도 지역별 서로 다른 체계로 운영되어오던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비·통합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비슷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통일하고 현실화하여 행정의 형평성 및 체육시설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가족단위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달천공원 오토캠핑장의 사용료 적정화 및 신규로 설치되는 카라반의 사용료를 정하고 이용자 준수사항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



제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4. 4. 28. ~ 4. 30.) - 3일간

주/요/안/건/처/리/현/황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 관내 3개 매립장 시설유지관리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반입수수료는 산정원가대비 38.4%에 불과, 무분별한 매립 및 재정부담 가중으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의 부패유발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및 안전행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 동안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상남산호지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조건부 찬성의견 채택
- 제안이유

경상남도 고시 제2008-324호(2008.7.17.)로 정비구역 지정 된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179-1번지 일원의 상남, 산호지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의 변경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

▣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가족 생활안정보장 및 선박안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 발 의 자 : 김종대 의원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가. 지난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운항 중인 세월호가 진도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나. 더욱이 당시 탑승 중인 안산시 소재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일반인 탑승자, 선원 및 승무원 등에게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사고에 대한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다. 따라서 향후 이런 대형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한 구조작업과 피해지원 대책 방안이 시급한 상황임.

라. 이에 창원시의회의는 110만 창원시민과 함께 슬픔과 고통을 나누면서 신속한 인명구조와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 구조자에 대한 심리적·육체적 안정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제안함.



제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4. 6. 13.) - 1일간

주/요/안/건/처/리/현/황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본청의 한시기구인 균형발전국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임.

▣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의회 의원정수 감축에 따른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본청의 균형발전국 일반직 4급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매년 물가 및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증가해 왔으나 종량제 봉투 가격은 수년 동안 동결되어 시 재정부담 증가로 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안정행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대비 낮은 주민부담율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가포 수변 오토캠핑장이 2014년 6월 준공됨에 따라 기 제정되어 시행중인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에 포함하여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5분 자유발언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5분 자유발언)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치 우 의원

진해구 웅동1동 대장동마을
주민 고통 해소방안 강구
(2014. 4. 28.)

웅동1동 대장동마을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여름철이면 계곡을 찾는 가족단위 피서지로 유명하며 70여 세대 2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 하지만 대장동마을을 둘러싸고 4개의 대형 도로 건설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지역은 완전 고립되어 생존권과 조망권을 훼손당함은 물론 도로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극에 달해 있음. 이에 주민들은 이러한 고통을 더 이상 간내할 수 없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4곳의 도로에 대해 통합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소음분진 방지시설을 환경규정에 맞게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창원시 차원에서 민원을 해소할 대책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임.



이 옥 선 의원

가로수를 메타세콰이어에서
다른 수종으로 교체할 것을
제안함.(2014. 4. 28.)

현재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메타세콰이어 나무의 뿌리가 도로변의 하수관을 파고들어 관로가 좁아지면서, 오수관의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 피해가 심각함. 하수관 직관로 사업에 대한 사후대책 마련을 위해 각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나가야 하고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변경해야함. 나무 한 그루를 처리하는 비용만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적인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대형 사업비의 일부라도 쪼개어 투입한다면 주민들의 불편함이 훨씬 줄어들 것이고 가로수 교체가 예산 문제 등으로 한꺼번에 교체하기 어렵다면 시급한 지역부터 검토해 제거 및 수종을 변경해야함.



송 순 호 의원

내서IC 관리권 이양받을 절호의 기회, 행정과 지역정기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2014. 4. 28.)

내서IC는 2004년 8월에 내서농산물도매시장 개장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편익 증진과 서마산IC 인근 도로의 교통지·정체를 해소할 목적으로 통합전 마산시의 요청으로 도로공사에서 개설했음. 하지만 문제는 내서IC 개설후 10년째 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개설의 본래 목적을 다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임. 결국 교통편익 증진과 교통정체 해소에 대한 비용을 직접 주민이 부담함으로써 행정이 책임져야 할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음. 그동안 10년 동안 주민들이 부담한 235억원에 대한 보상으로 내서IC 통행료가 무료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부디 주민들의 요구를 지역의 정치권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김 중 대 의원

안전사고대책, 문서만이 아닌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을 촉구하며.(2014. 4. 30.)

지난 4월16일 전남 진도 맹골수로 해상에서 여객선 침몰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고귀한 목숨을 잃어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음. 창원시에서도 크루즈선이 운행되고 있는 만큼 도선선박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야 함. 특히 창원시와 유관기관의 재난관리체계와 기관별 유기적 기능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음. 이론과 시스템상으로는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발생하면 공조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함. 우리시에 적합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한 달에 한번 이상은 유형별, 사례별 대처요령과 생활안전 요령의 교육과 실제훈련을 주기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임.



방 중 근 의원

대원1구역 재건축 사업 추진에 행정적 지원을 촉구하며...
(2014. 4. 30.)

의창구 대원동 37-1번지 일원 810세대에 해당하는 대원 1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촉구함. 대원1구역의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로템이 사원아파트 등으로 지분 56%를 보유하고 있으나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노조 및 사측과 협의의 중이라고는 하나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창원시는 현재 담보상태에 놓인 대원 1지역의 재건축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와 노조 및 사측과의 간담회를 통한 중재 노력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노후화 된 건축물이 정비되어 쾌적하고 품격 높은 친환경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함.



이 명 근 의원

태풍 매미 추모기념관, 재해안전학습관 설립을 촉구하며...
(2014. 4. 30.)

지난 2003년 9월 12일 태풍 매미 내습 시 해일 등으로 통합전 마산시 지역에만 18명의 희생자가 나왔으며 이후 추모제를 지내고 있음.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주었던 참사를 거울삼아 시민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희생자와 유족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어루만져줄 수 있는 ‘태풍 매미 추모기념관, 재해안전학습관’ 건립을 제안함. ‘태풍매미추모기념관, 재해안전학습관’ 건립장소는 마산합포구 해운동 ‘태풍 매미 추모공원’ 일대가 예산을 절약하고 건립 추진 취지와도 맞아 적합하다고 봄. 이미 태풍 매미와 관련해 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마산항 방재언덕 공사가 초임기에 들어갔지만 더 필요한 것은 시민 안전의식의 함양이라 할 것이며 기념관, 학습관 설립이 그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봄.

남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불가처분에 따른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2014. 1. 15. 창원시는 남산주공아파트의 신축건축물의 배치계획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인접 공장(DH케미칼)의 혼합시설로부터 50m 이격되지 않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불가 처분 하였다. 시는 그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건축심의 등 단계를 아무런 문제없이 인·허가 하였음에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불가 처분하여 재건축 주민 460세대는 주거 안정성 등 문제로 심각한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07호)한 업종의 공장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재건축 대상인 남산주공아파트로부터 50m 이내 지점에 대기발생량 5종사업장인 『DH케미칼』이 위치하고 있어 창원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 불가처분을 받은 것이다.

구. 창원시는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3.12.제정) 이전에 구.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중화학기계공단을 조성하면서, 공업 단지와 인접하여 창원대로변 장방향모양으로 지원시설인 공동주택 부지를 조성한 태생적·근원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50m 이격 거리 규제(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1991. 1.제정)를 신설하면서 도시의 태생적·근원적인 한계를 고려한 특례규정은 없으며, 현재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인접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약 7천여 세대)이 30년 이상 경과하면서 점차 노후화 되어 재건축을 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창원시 의회는 110만 창원시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이격 거리 규제신설(1991. 1.)이전에 개발이 완료된 사업(남산주공아파트 1976. 3. 준공)에 대하여는 특례를 신설하라.
2. 규제신설(1991. 1.) 이후 고도의 산업발전에 따른 비약적인 기술발전이 이에 뒤따랐으므로 50미터 이격 업종대상을 완화 또는 현장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를 도입하라.
3.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이나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모두 이격 거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라.
4.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주거시설로부터 10m 이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또다시 50m이격하도록 한 이중규제를 철폐하라.

창원시의회는 창원시가 시민을 우선시하고 공익을 앞세우는 행정을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110만 창원시민과 함께 남산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시행인가 불가처분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4년 4월 28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지지 결의안

헌법 제36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 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 남성의 경우 후두암의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작년 8월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공단은 연간 1조 7천억 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지난 4월 14일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 는 연 7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주정부들이 소송을 준비하자 담배회사들이 역사상 최대 규모인 2,060억 달러(한화 약 220조원) 배상에 합의하였으며, 캐나다는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 제정 후 소송을 진행하여 500억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에 흡연의 피해를 분석하고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소송은 ‘정부3.0’ 과 ‘복지재정의 누수방지’ 등 정부의 정책기조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연한 책무임을 확인하며 우리 창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하여 ‘담배회사’ 에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지한다!
2. ‘담배회사’ 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3. 우리 창원시의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4년 4월 28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가족 생활안정보장 및 선박안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지난 4월 16일 진도 해상에서 476명의 승객을 싣고 침몰한 세월호의 희생자와 실종자 모든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그 유가족에게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욱이 한참 집안에서 사랑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단원고교 학생들의 희생과 실종은 자식을 둔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도 울렸습니다.

밤새 서해벚길을 달려 제주도를 불과 2시간여 남기고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과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어린 꽃들은 피어보지도 못하고 황량한 서해바다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된 사망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들이 부디 신속한 구조를 통하여 무사히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기를 우리 창원시 110만 시민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는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 구조자에 대한 심리적·육체적 안정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이번사고로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안산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들이 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방안을 제공해야 하며 만족할 만한 재정적 보상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17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로 대학생 10여명이 사망한데 이어 이번에는 고교생 수백 명이 안전 불감증으로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하루가 갈수록 희생자는 늘고 국민의 분노와 슬픔은 건잡을 수 없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창원시의회의는 110만 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희생자, 실종자, 구조자 및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국회는 계류 중인 선박안전관련 14개의 법안을 조속히 처리 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정부는 해상안전운항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재검토로 다시는 이런 해상침몰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입법화하고 철저한 관리를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4년 4월 30일

창원시의회의 의원 일동

위·원·회·활·동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우서)는 지난 4월 17일 제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37회 창원시의회(임시회)를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 개최하기로 하였다.
- 4월 28일 제3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건을 원안가결 하였다.
- 6월 9일 제3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를 6월 13일 1일간 개최하기로 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차형보)는 제3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보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 2014년도 창원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하였다
- 6월 13일 제3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중 ▷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

위·원·회·활·동

균/형/발/전/위/원/회



-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공창섭)는 제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또한 같은 기간에 ▷2015년도 상생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 선정 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경/제/복/지/위/원/회



-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정영주)는 제3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지원 조례안과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으며,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수정가결하였다.

환/경/문/화/위/원/회



- 환경문화위원회(위원장 홍성실)는 제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2014.4.28.~4.30.)기간 중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쓰레기 봉투가격을 포함하여 사용자들에게 이중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고,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의 창원스포츠파크 등 전용사용료의 시간을 맞게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조정하는 등 현실성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고,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안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다.
- 제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2014.6.13.) 기간 중에는 지난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종량제 봉투 가격 등의 주민부담률을 원안대비 하향조정하여 수정가결하고, 공공요금의 불가피한 인상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당부하였으며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황일두)는 지난 4월 29일 제3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 상남산호지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하여 부대의견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롯데백화점 지하연결통로 추진상황을 성산구로부터 보고 받았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4월 8일 효성 굿스프링스 펌프 시험센터 준공식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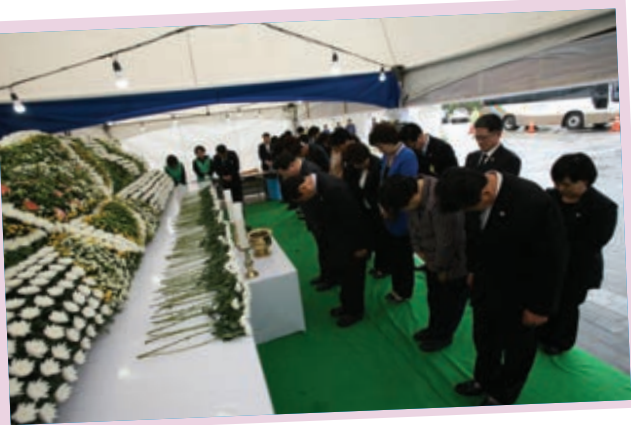
4월 16일 제26회 JCI어린이회의의진행교실 개최



4월 16일 제34회 장애인의 날 행사 참석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4월 28일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4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4월 28일 제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최



5월 1일 일본인 방문단 의회 방문



6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6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



6월 13일 환경문화위원회 안건 심사



6월 13일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최



6월 13일 제1대 창원시의회 폐회

언론보도자료

창원시의회, 제37회 임시회 개회



창원시의회(의장 배종천)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제3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임시회 첫날인 28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 29일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마지막 날인 30일, 창원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 시의회는 ▲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 창원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지원 조례안 ▲ 창원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안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9건과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지지 결의안 등 2건이 상정돼 있다.

배종천 의장은 개회사에서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시대의 든든한 밑거름이 됨과 동시에 창원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큰 기틀이 될 것 이라 생각하며 그동안 보여주신 남다른 노력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통합창원시의회 제1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줄 것” 을 당부하였다.

창원시의회 전체의원,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창원시의회(의장 배종천) 전의원들은 28일 오후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후 도청 현관 앞 주차장에 마련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 후 묵념하였다.

창원시의회, 농촌일손돕기 참여



창원시의회(의장 배종천) 직원들은 15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창구 동읍 전촌마을 단감농가를 방문하여 감꽃 숙아내기 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제1대 창원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개최



창원시의회(의장 배종천)는 13일 제1대 창원시의회 마지막 일정한 제38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기에 시의회는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게 된다.

배종천 의장은 개회사에서 “ 초대 통합창원시의회 의원으로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고 창원시의회 개원 이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코자 노력해 왔고 시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은 창원시의회가 선진 지방의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확신하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발전 방안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개선 그리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더욱더 발전하고 정착될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대한다” 고 했다.



창원시의회

<http://council.changwon.go.kr>